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안)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방하고 개방제한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주민에게 고지토록 함(안 제5.6조)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편의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19조)

○시설 사용시간은 하계와 동계로 구분, 하계 05:00-19:00, 동계 06:00-18:00 까지로 한다(안 제9조)

○시설 사용료를 규정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으로 구분하여 체육진흥행사 및 불우청소년, 어린이, 경로자는 감면토록 함.(안 제10. 12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재정근거

○사용료 징수: 지방자치법 제127조, 130조

○체육시설관리운영 위탁: 대통령지시사항(784, 12-27-40, '90.1.31)

4. 조례(안): 별첨

5. 사전예고: 구청 게시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경기장, 실내체육관, 정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게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10명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6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3조(허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구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

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 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2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시는 별표 1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 구의 국, 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근로자, 군인, 학생
4.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5.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과 누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장권 대표)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대표한다.

다만,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 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구청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전용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200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첨부토

목 한다.
제23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평일주간 기준)

구장별	체육경기	체육이의 행사
망원동테니스장	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	44,000원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함.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별표 2)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기 준	사 용 료	비 고
1면당	1,960원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 ○학생, 군인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 일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추경)

1.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승 인 요 청		승 인		불 승 인	
	품목/수량	금 액	품목/수량	금 액	품목/수량	금 액
계	16/114	106,663.4				
신규취득	15/104	103,539.4				
대체취득	1/10	3,124				